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3항 관련)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고용정책 심 의 회 . 고용보험 위 원 회 조사·연구 위 원	가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정책·고용보험·직업훈련분야(이하 “고용정책분야” 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용정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고용정책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정책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고용정책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권자가 고용정책심의회(또는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나”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가”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정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고용정책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정책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고용정책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권자가 고용정책심의회(또는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다”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나”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고용정책 심의회 · 고용보험 위원회 조사·연구 위원	다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정책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고용정책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정책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정책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고용정책심의회(또는 고용보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라”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라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용정책분야의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정책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용정책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고용보험 통 계 전문위원	가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통계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통계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통계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통계전문위원 “나”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가”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통계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통계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통계전문위원 “다”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나”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통계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조사· 연구위원	가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 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 관리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분야 그 밖에 필요한 분야 (이하 “산업안전보건분야” 라 한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부문의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5년 이상인 사람 으로서 3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서 9년 이상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나”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가”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조사· 연구위원	나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5년 이상인 사람 으로서 3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경력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6년 이상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다”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나”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다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서 3년 이상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라”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라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학과(산업재해통계분야포함)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6.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고용보험 심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가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로서 고용보험심사 재심사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이하 “관련분야” 라 한다) 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 경제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 경제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나” 등급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 하여 “가”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 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 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다” 등급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 하여 “나”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 등급	<p>【 채용 시 】</p> <p>「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자산운용 전문위원	가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운용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자산운용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자산운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자산운용 전문위원 “나”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가”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운용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자산운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자산운용 전문위원 “다”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나”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운용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산운용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p>【 승급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권자가 자산운용 전문위원 “라” 등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라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자산운용분야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기금관리 실무관	라 등급	<p>【 승급 시 】 채용권자가 “마” 등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라”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p>
	마 등급	<p>【 승급 시 】 채용권자가 “바” 등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마” 등급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p>
	바 등급	<p>【 채용 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산회계운용사 2급, 세무회계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 2~3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에 준하는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또는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 명	등 급	자 격 기 준
사 무 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평가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평가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워드프로세서(구 2~3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이에 준하는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또는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워드프로세서(구 2~3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이에 준하는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또는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속 기 사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원, 청원경찰 등은 별도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